

프랑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

강 흥 진
(SAINT Consulting 대표)

[특집]

2012년도 Global Legal Issue는 최근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생발전'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주제별로 다룰 계획입니다. '공생발전'은 '자본의 책임'과 '상생번영'이 중시되는 시장경제모델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연재순서]

- 고용관계에서의 평등확립을 위한 법제
- 노인복지 관련법제 - 독일, 프랑스, 중국
-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제
-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
 - 덴마크, 프랑스, 일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I. 서론

II. 법제

1. 실천 과정
2. 다양한 법률 조항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과 감독

III. 정책

1. 중소기업 참여 정책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라벨 및 인증
3. 기업, 노조 및 시민 단체 활동

VI. 사회적 책임 투자

I. 서론

10여 년 전부터 프랑스 대기업은 기업의 주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여 책임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여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NGO의 압력 증가에 직면해 상기 기업들은 프랑스 및 외국에서의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개념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 공리적 책임, 그리고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기업의 환경, 사회 및 경제 기여가 포함된 경영 활동 평가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진화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을 상업 활동과 기업의 이해 관련 파트너와의 관계에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행위(*l'intégration volontaire par les entreprises de préoccupations sociales et environnementales à leurs activités commerciales et leurs relations avec leurs parties prenantes*)”라고 정의한다.¹⁾

프랑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 환경 및 경제적 관심사를 기업 활동 및 이해 관련 파트너와의 상호 관계 내에 통합하는 개념(*concept concept dans lequel les entreprises intègrent les préoccupations sociales environnementale et économiques dans leurs activités et dans leurs interactions avec leurs parties prenantes sur une base volontaire*)”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Développement durable)²⁾을 위한 기업의 기여³⁾(*Grenelle de l'Environnement*, Ministre de l'Ecologie, de l'Ener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Rapport final, 21 mars 2008, page 3)라고 정의한다. 2010년 프랑스 환경, 에너지 및 지속 가능 개발부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sociale)보다 구체적인 개념의 기업 경영활동의 파트너인 고객, NGO,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및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sociétale)책임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 환경 및 경제분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정의되는 기업

1)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du 22 mars

2)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의 기본적인 충족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회의 환경, 사회, 경제 및 문화적 구성 요소 간의 평등한 조화를 통한 발전을 의미한다. 문화,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 발전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Definition-du-developpement,15067.html>

3) *Grenelle de l'Environnement*, Ministre de l'Ecologie, de l'Ener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Rapport final, 21 mars 2008, page 3

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의 세 가지 축을 통합한 지속적인 발전에 기업이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을 위해 유럽연합은 2000년 3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리스본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책 우선 순위의 앞 부분에 기재했으며, 2001년 7월 18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녹서 발간과 2002년 7월 2일 발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 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럽 다자 포럼을 개최했으며, 사익 포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에 대한 분석과 권고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2006년 3월 22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유럽연맹을 창설했다.

상기 유럽연합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랑스는 국내 차원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고시키고자 했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 시행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 수단으로 인식해 다양한 국내법을 제정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규정한다(2009년 8월 3일 그르넬 1법 제53조).

- 2001년 5월 15일 신경제 규제법 제116조에 기초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기업 활동 관련 파트너(주주, 근로자, NGO, 근접 거주민 등)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연례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 정보 포함
- 지속적 발전에 관한 근로자 대표 기관의 역할의 구체화 작업에 기업 활동 파트너(근로자 대표 기구) 참여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유치한 지방 협의 단체에 대한 새로운 지속 발전 내용 통보
-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에 관한 등급 라벨 창설에 대한 정부 지원
- 환경 관리 시스템 개발과 중소기업 및 공단 지역에 대한 기업의 사회 및 환경 등급 시스템의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
- 사회 책임 투자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 유럽연합 차원의 사회 및 환경 지표에 관한 공동 좌표 설정 촉진에 참여

4)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Responsabilite-societale-des.html>

2010년 7월 12일 그르넬 2법은 “다양한 자본의 투자 회사외 자산 관리 회사는 고객에게 제출되는 연례 보고서와 투자 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에 사회, 환경 및 양질의 투자 관리에 관한 투자 기준 정책 방식을 기재한다.”고 규정한다(제224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기관인 Novethic에 따르면 2001년에 70개에 달하던 사회 책임 투자 상품은 현재 200여 개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II. 법 제

1. 실천 과정

프랑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기적인 지속적 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2001년 5월 15일 신경제규제에 관한 법 n° 2001-420(Loi n° 2001-420 du 15 mai 2001 relative aux nouvelles régulations économiques: NRE 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했다. 2003년 1월 13일 요하네스버그 행동 계획에 따라 지속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u Développement Durable - CNDD)가 설립되어 “지속 발전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2003년 상기 위원회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 책임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했다. 2007년 9월과 10월에 개최된 그르넬 환경(Grenelle Environnement)은 국가 및 민간 분야(지방 자치 단체, NGO, 기업가 및 근로자) 대표들이 참가한 정책 회의로서 장기적인 지속 발전에 관한 정책 토론을 거쳐 지속적 발전을 위한 268개의 행동 강령을 채택했다. 2008년 운영위원회는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Entreprises et RSE)” 보고서를 발간해 2007년 그르넬 환경에서 채택한 행동 강령의 이행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포함된 계획을 제안했다.

상기 보고서에 기초해 2009년 8월 3일 그르넬 환경 시행에 관한 법 n° 2009-967(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Grenelle 1법)과 2010년 7월 12일 환경에 관한 국가 참여에 관한 법 n° 2010-788(LOI n° 2010-788 du 12 juillet 2010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nvironnement: Grenelle 2법)이 제정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프랑스 정책의 입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 다양한 법률 조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프랑스 법은 정부 조달, 기업 활동 투명성 및 사회 책임 투자 분야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한다.

1) 정부 조달

정부 조달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4/18/CE와 2004/17/CE를 국내법에 반영한 2006년 8월 1일 법령 n°2006-975(Décret n°2006-975 du 1er août 2006 transposant les directives européennes “marchés publics” 2004/17/CE et 2004/18/CE)에 의해 2006년 개정된 정부 조달법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목표를 고려한 정부 조달(제5조)과 정부 조달 품목 구매 결정에서 환경 라벨에 기초한 환경 기준을 포함할 것을 규정한다(제6-VII조).

상기 법에 준거해 프랑스 정부는 2007년 3월 지속적인 정부 조달 구매 활동에 관한 국립계획(Plan national d'action pour des achats publics durables - PNAAPD)을 설정해 모든 공공 구매자에게 사회적 및 환경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구했다.

2008년 4월 9일 사회적 책임 공공구매 정책발전에 관한 각료회의 발표문과 2008년 12월 3일 공공 서비스와 공공기관의 지속적 발전에 관련된 국가의 모범에 관한 총리 지침은 2012년도까지 정부 구매의 10%를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의 제품의 구매로 충당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 기업 활동 투명성

2001년 5월 15일 신경제규제에 관한 법은 상법의 제L225-102-1조를 개정해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영 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내용 삽입 의무를 규정한다(제116조). 상기법에 의해 개정된 상법 제L225-102-1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보고 의무를 규정한다. 상기 규정의 적용 대상은 주식시장 상장기업, 법령이 규정하는 결산, 매출액 및 고용 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며, 상기 기업은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및 환경 결과에 대한 고려 방식과 지속적 발전 촉진을 위한 사회적 약속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적인 의무와 관련해 기재되는 사회적 및 환경 정보는 국가평의회의 법령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검사 대상이 된다. 상기 검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의견 또는 이사회 보고서에 기재된다.

상기 규정은 주주와 경영 활동에 관련된 근로자 및 기타 파트너에 대한 기업의 경영 투명성 보장을 통해 기업의 환경 및 사회 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 8월 1일 금융 안전에 관한 법 n° 2003-706(Loi n° 2003-706 du 1 août 2003 de sécurité financière)은 국제적인 경영 활동을 행하는 상장 기업에게 다양한 형태의 재정 위기 대비에 필요한 준비, 감독 절차 및 감독 위원회 조직에 관한 특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기업 내의 모든 관리자에게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제117조).

또한 상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환경을 고려해 연례 보고서에 환경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한 위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하며(제225-100조), 상장 기업은 경영 활동 중 발생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25-102조 4항).

2009년 8월 3일 그르넬 1법은 상장 기업 및 기타 기업과 상기 기업의 자회사의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기업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제53조), 제품 및 포장에 소비자를 위한 환경 정보로서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판매장소, 제품 유통 경로 및 제품 생산이 야기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보 게재 의무를 규정한다(제54조). 상기 규정에 준거해 프랑스는 국가가 주도하는 토목 및 주택 건설 분야에서의 지속적 발전과 에너지 관리 개선을 위한 국민 홍보에 관한 다년 정책과 지속적인 소비에 관한 홍보 정책을 이행한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징세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 즉 기후 또는 바이오 에코 시스템에 적은 영향을 끼치는 제품의 가격 인하에 대한 보조금과 부가 가치세 감면을 지원한다.

2010년 7월 12일의 그르넬 2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기업의 사회 기여 활동 촉진을 위한 상기 법 적용에 관한 정부 보고서의 의회 제출 의무를 규정한다(제225조). 상기 규정에 준거해 프랑스 정부는 대기업을 연례 경영 보고서에 재정 분야를 제외한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 활동에 관한 정보 포함에 관한 법 적용의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2011년 1월 1일 바람직한 기업 경영 관습을 위한 지시 BP X 30-323를 통해 대량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위생, 주택, 공공 교통 서비스, 전화 등 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제품의 유통 경로 추적을 위해 제품의 생산 조

건과 생산지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위한 조건을 제안한다.⁵⁾

상기 정책에 대해 특정 분야의 프랑스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성, 사회 및 환경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를 위한 기업간 협력 방식을 선택했다. 이미 2005년 릴 시의 야마나(Yamana) 시민단체에 의해 주창된 시민 섬유 운동(Fibres cityoynnes)⁶⁾은 섬유 및 의상 분야의 9개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 및 환경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시민 섬유 운동은 소비자, 생산 기업 및 제품 유통 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의무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참가 기업은 사회 책임 활동에 대해 공권력, 경제 및 민간 기업 대표로 구성된 감독 위원회의 자문과 승인을 받으며, 공공 기관, 기업 및 개인으로 구성된 섬유 제품 소비자 단체와의 협의에 참가한다.

3) 사회적 책임 투자

2001년 7월 17일 사회, 교육 및 문화 질서에 관한 다양한 규범에 관한 법 n° 2001-624(Loi n° 2001-624 du 17 juillet 2001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social, éducatif et culturel)은 제2편 퇴직자를 위한 예비 기금의 제6조는 사회, 환경 및 윤리 측면을 고려한 기금 투자 정책 수립을 규정한다. 정책 감독위원회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 자산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가장 바람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명시할 것을 집행 이사회에 촉구할 수 있다.

2001년 2월 19일 급여 예금에 관한 법 n° 2001-152(Loi n° 2001-152 du 19 février 2001 sur l'épargne salariale)은 제3편 자의적인 급여 예금 파트너 계획에서 기금이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회, 환경 또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투자 기금을 규정한다. 규정에 준거해 상기 기금은 연례 투자 보고서에 규정 적용을 명기해야 한다.

2008년 8월 4일 신경제 규제법 또한 기업의 예금 계좌에 가입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일환인 기업 연대 투자에 근로자의 기업 예금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1조).

5) <http://www.afnor.org/content/view/full/12036>

6) <http://www.fibrecitoyenne.org/>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과 감독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한 공공 기관

프랑스는 2003년 1월 13일 기업의 사회적 촉진을 임무로 하는 민간 대기업에서 선출된 대표 90명으로 구성된 지속적 발전 국립위원회(Conseil National du Développement Durable)를 창설했다. 2006년 정부 주도하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속적 발전 클럽(Club des développement durable des établissements publics et entreprises publiques)”이 설립되어 현재 교통 서비스, 복권, 박물관, 항구, 병원, 대학, 상공 회의소 등 40개의 공공 기관 및 공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기관 및 기업은 지속적 발전 정책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규칙적으로 발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구축에 참여한다.

2007년 개최된 그르넬 환경 회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NGO, 기업주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6개의 다자간 작업 그룹으로 나누어져 1) 기후 변화 방지 및 에너지 수요 관리, 2) 생물 다양성 보존과 천연 자원 보존, 3)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 창설, 4)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 양식 채택, 5) 환경 민주주의 건설의 다섯 가지 주제에 관한 토론을 주재했다. 그르넬 환경 회의는 최종 보고서에서 기후 온난화 방지, 생물 다양성 환경 보호 및 공해 감소에 관한 세 가지 우선 정책을 채택했다.⁷⁾ 또한 그르넬 환경 회의 이후 프랑스 정부는 “2009년 - 2012년 지속적 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에서 1) 기후 변화 및 대체 에너지, 2) 천연 자원 보존 및 관리, 3) 공중 건강, 예방 및 위기 관리, 4) 세계 빈곤과 지속적 발전 저해 국제 요소, 5) 교육 및 직업 훈련, 6) 연구 및 개발, 7) 사회 참여, 인구 및 이민, 8) 통치, 9)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 10) 지속적인 교통과 이동성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다. 상기 지속적 발전 전략은 유럽 연합의 지속적 발전 유럽 전략에 부합해 이행되며, 특히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 빈곤 위기율 또는 개발을 위한 공공 지원 분야가 포함된다.

2009년 11월 13일 가족 및 연대부의 정무 차관과 다수의 프랑스 주요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서 ‘장애자 채용 헌장’⁸⁾에 서명했다. 상기 헌장은 장애자 고용에 관한 강제적인 규정 준수를 초월하는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자 고용을 기업의 최고 경영 정책의 일부로 채택하도록 촉구하면서, 주주에 관한 기업의 책

7) <http://www.legrenelle-environnement.fr/Presentation-du-Grenelle.html>

8) <http://www.social-sante.gouv.fr/espaces,770/handicap,775/dossiers,806/insertion-professionnelle-des,1650/la-charte-de-l-insertion,10850.html>

임보다 광범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개발 지원을 임무로 하는 프랑스가발원(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은 환경 및 사회 위기 관리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며, 환경 및 사회 측면에 관한 정책 지원 개선을 이행한다.⁹⁾

프랑스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인 코파스(COFACE)¹⁰⁾는 고객 기업에게 “공공 지원을 받는 환경과 수출 대출에 관한 OECD 권고”에 준거해 환경 및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프랑스는 2008년 9월 15일 외무 및 유럽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당 대사직을 신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협력과 관련 프랑스 경제 및 사회 파트너에 대한 홍보 임무를 담당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감독기관

2000년에 설립된 “프랑스 국립 연락 포인트(Point de contact national)”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OECD의 지침 이행을 임무로 한다. 포인트는 국가, 기업 단체 및 노조 대표로 구성되며, OECD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2004년 설립된 “평등 차별 방지 고등 기구(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l'Égalité - HALDE)”는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임무 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불이행에 관한 불만을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권에 해당 조사를 이송할 수 있다.

III. 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을 위해 프랑스는 특히 연구 계획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에 관한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라벨 수립과 인증 정책을 발전시켰다.

9) <http://www.afd.fr/home>

10) <http://www.coface.com/>

1. 중소기업 참여 정책

1) 산업 모델 지원 기금

환경과 에너지 관리기구(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 - ADEME)¹¹⁾는 4년간 4억 유로의 예산으로 2세대 바이오 석유, CO₂ 채취 및 저장, 재생 에너지, 온실 효과 배기 가스를 감소하는 자동차, 에너지 절약 주택, 인공 지능을 갖춘 에너지망, 에너지 저장과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신 에너지 기술을 지원한다.

2) 미래 투자

프랑스는 2010년 지속적인 발전과 녹색 기술 개발에 대규모 지원을 공공 대출 형식으로 이행하는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 기술 분야의 연구 단계 또는 산업화 이전의 제품에 대해 30억 유로를 지원한다. 이 중 15억 유로는 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 10억 유로는 지속적인 교통과 도시 계획, 5억 유로는 주택용 난방 개선 분야에 지원된다.¹²⁾

3) 경쟁 강화 정책

경쟁 강화 정책¹³⁾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제계 및 학계가 주창하는 연구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은 혁신 노력 확대와 산업 및 연구 종사자 간의 공조 효과 강화를 통한 프랑스 경제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을 통한 프랑스 국내 산업 활동 강화, 국제 경제 전망 강화를 통한 프랑스로의 투자 매력 확대,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건설, 물자, 위기 관리,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수자원, 폐기물 처리, 토지 개선)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15개의 경제 포인트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2005-2007년 간, 2,000개에 달하는 환경 기술 분야의 연구 및 개발 계획이 상기 포인트로부터 13억 유로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11) <http://www2.ademe.fr/servlet/getDoc?id=11433&m=3&cid=96>

12) <http://investissement-avenir.gouvernement.fr/>

13) <http://competitivite.gouv.fr/>

4) 연구 개발 계획

2009년부터 2011년도 사이에 프랑스 산업부는 3,000만 유로를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 개발에 지원했다. 국립연구기구(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 ANR)는 2005년부터 기초 연구, 산업 연구 또는 생산 이전 단계 연구 계획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상기 기구는 또한 2009년부터 환경 기술과 지속적인 생산 계획에 대한 지원 계획을 이행한다.¹⁴⁾

5) 환경산업전략위원회

프랑스 환경 및 산업부는 2008년 7월 환경 산업 지원책에 관한 환경 기업과의 협의체인 환경산업전략위원회(Comité Stratégique des Eco-industries - COSEI)를 창설했다. 2009년 12월 환경 및 산업 담당 장관회의는 폐기물 처리 산업 육성, 수자원 및 정수, 재생 에너지 생산, 인공 지능을 갖춘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및 미약한 환경 영향을 소유한 건물에 관한 작업 그룹을 설립했다. 2010년 환경산업전략위원회는 환경관련산업위원회(Comité Stratégique des filière Eco-industries)로 개명되었으며, 다수의 환경 관련 산업(수자원, 폐기물,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조직, 환경 관련 분야의 산업활동 발전과정과 정책 방식 지도 및 해결책 제시, 중기 전략 정립 및 경쟁성 발전을 위한 제안, 결정된 산업 전략에 관한 관련 분야 기업과의 대화 개발 및 유지의 4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위원회는 기업, 노조, 환경 전문가 및 연구, 개발 및 교육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 환경 기업 라벨을 창설해 상기 라벨 수여 기업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¹⁵⁾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라벨 및 인증

1) 근로자 예금조합 연합위원회

2001년 2월 19일 근로자 예금에 관한 법 n° 2001-152 (Loi n°2001-152 du 19 février 2001 sur l'épargne salariale)은 근로자 예금조합 연합위원회(Comité inter-

14) <http://www.agence-nationale-recherche.fr/>

15)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Mission-et-organisation-du-Comite.html>

syndical de l'épargne salariale - CIES)를 설립했다. 상기 위원회는 대기업 및 중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 유도와 근로자 예금을 이용한 기업 행동 변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예금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노조는 근로자 예금 관리를 감독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 기관(은행, 보험회사, 사회 보장 그룹 등)이 제안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라벨을 부여한다. 상기 라벨에 준거해 근로자는 라벨 부여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다. 현재 14개의 근로자 예금 기금이 상기 위원회가 부여한 금융 상품에 대해 12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한다.¹⁶⁾

2) Vigéo 등급 라벨

2002년 예금 및 위탁 기금의 주창하에 설립된 Vigéo 등급 라벨은 금융 상품 및 기업 평가 기구인 Vigéo가 부여한다. 상기 라벨은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 지수를 통합한 기업 평가에 기초해 부여된다. Vigéo는 또한 고객 기업의 요구에 기초해 인권, 사회 참여, 기업 경영, 환경, 인사 및 시장 활동의 6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며, 해당 기업은 상기 평가에 의거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¹⁷⁾

3) 직업 평등 라벨

직업 평등 라벨은 사회 연대 및 형평부의 지원을 받아 2005년에 설립되었다. 상기 라벨은 기업, 행정부 및 기타 모든 기관의 남녀 근로자 간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 평등 라벨은 직업에서의 남녀 평등 촉진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적 발전에 기여한다. 라벨 부여는 프랑스공업표준화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가 발급하는 “AFNOR 인증”에 준거해 부여된다. 라벨은 3년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2011년에 800,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48개의 기업이 상기 라벨을 획득했다.¹⁸⁾

16) <http://www.ci-es.fr/>

17) <http://www.vigeo.com/csr-rating-agency/fr/vigeo-rating>

18) <http://www.afnor.org/liste-des-actualites/actualites/2011/mars-2011/label-egalite-professionnelle-femmehomme-48-organismes-labellises-au-benefice-de-840-000-salaries/>

4) 다양성 라벨

다양성 라벨은 2008년 9월 12일 국가의 요구에 의해 국립인사관리이사협회(As-sociation Nationale des Deirecteurs des Ressources Humaines)에 의해 설립되었다. 다양성 라벨은 2010년 3,000개의 기업이 서명한 반 인종 차별 참여와 다양성 촉진 정책을 위한 직업 윤리 헌장을 바탕으로 한다. 상기 라벨은 인사 관리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 방지와 기업 문화의 다양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성 라벨은 프랑스 공업표준화협회(AFNOR) 조사에 준거해 관련 행정 부처, 기업 대표 기구, 노조 및 인사이사국립협회가 지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라벨부여위원회가 결정한다. 라벨은 3년 기간으로 발급되며, 18개월마다 중간 검사를 받는다. 라벨 부여 조건은 법이 규정한 인종 차별에 대한 해결 노력, 인종 차별 예방과 다양성 촉진 정책 이행, 인종 차별 방지에 대한 기업 내부 소통, 교육 및 여론조성 이행, 취업 희망자의 취업 활동 시 차별 방지 원칙 통보, 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의 이행의 효율성에 기초한다. 현재 90개 기업이 다양성 라벨을 부여받았다.¹⁹⁾

3. 기업, 노조 및 시민 단체 활동

1) IMS

1986년 기업 대표들에 의해 설립된 IM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230개 이상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한다. 협회는 건전한 환경, 에코 시스템과 공유하는 가치 창조라는 기초에서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탄생되었다. IMS는 회원 기업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간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개선 및 평가를 이행하며, 특히 취업, 다양성, 평등한 교육 기회, 사회 연대 파트너십 및 사회 참여 경영 분야에 중점을 둔다. 또한 회원 기업들에게 평가 공유, 연구 및 활동 계획, 기업 간 활동, 자문 및 교육,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바람직한 경영 촉진을 제안한다.²⁰⁾

19) <http://www.fonction-publique.gouv.fr/fonction-publique/carriere-et-parcours-professionnel-37>

20) <http://www.imsentreprendre.com/page/ims-entreprendre-pour-la-cite>

2) 환경을 위한 기업 협회

1992년 창설된 환경을 위한 기업프랑스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s Entreprises - EpE)는 현재 경영 전략과 일상적인 업무에 환경 문제를 고려하기를 원하는 40여 개의 프랑스 및 국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협회는 두뇌 집단을 활용한 환경 문제 분석과 환경 문제에 관한 최선의 접근 방식 및 지식 공유를 통한 기업의 환경 보호 기여를 임무로 한다. 임무 수행을 위해 협회는 기후 변화, 환경과 건강 간의 관계, 환경 예측, 생물 다양성, 환경 경제 등에 관한 위원회, 상설 또는 한시적 작업 그룹을 운영한다.²¹⁾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측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측소(Observatoire sur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 ORSE)는 2000년 6월 30여 개의 대기업, 투자 회사, 노조, 경기 예측 기구의 합의에 기초해 설립되었다. 관측소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임무를 수행한다.

- 프랑스와 외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책임 투자에 관한 정보, 자료 및 연구의 수집, 분석 및 홍보
- 획득한 정보를 회원사에 전달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경제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 설립
- 회원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원을 위한 수단(정보, 외국 네트워크 조사)
- 회원사가 획득한 경험과 정보 교환 촉진
- 프랑스 인접국이 이행하는 최선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발굴
- 작업 그룹을 통한 회원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정책 수립 지원
- 경제, 사회 대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기관의 관심 유도
- 프랑스, 유럽 및 국제 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파트너십 결성 촉진
- 신경제 규제법 적용에 대한 평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교육²²⁾

21) <http://www.epe-asso.org/>

22) http://www.orse.org/presentation_de_l_orse-33.html

4) 남녀 간 직업 평등에 관한 직업 간 국립 협약

2004년 3월 1일 프랑스 노조 대표와 기업 대표는 직업 간 국립협약(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을 체결했다. 협약은 직업 평등, 근로자, 취업·직업 훈련, 승진, 학업 진로 결정, 직장 생활과 가족 생활의 조화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경제 활동 계층 간에 남녀 간의 직업 평등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이후, 상기 협약은 금융, 전기 및 가스 산업, 의약 산업, 통신, 금속 산업, 유리 산업, 임시 근로 분야에서 직업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15개의 산업별 협약이 체결되었다.²³⁾

5) 프랑스공업표준화협회

프랑스공업표준화협회는 “지속적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화 위원회 (Commission de normalisation Développement durable – Responsabilité sociétale - CNDDRS)”를 설립해 지속적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임무를 담당케 했다. 상기 위원회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표인 지침 20000과 지침 ISO 26000을 설정하고 상기 지침의 적용 촉진과 지도를 이행한다.²⁴⁾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이행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의 신빙성 개선을 위한 지침 제공, 획득된 결과와 개선책 부각, 고객 만족 및 신용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동 전문 용어 촉진, 기존의 자료, 조약과 협약 및 기타 ISO 규범과의 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²⁵⁾

프랑스공업표준화협회는 또한 “지속적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ISO 21000 방법론 가이드”를 발간해 ISO 26000 규범 제정을 포함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화작업 및 기업의 경영 전략 및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상기 가이드는 프랑스 또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산업 분야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는 기업 경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규범 자료 제공과 기업의 경영 목표 설정과

23) <http://www.lexisnexis.fr/pdf/DO/mixite.pdf>

24) http://www2.afnor.org/espace_normalisation/structure.aspx?commid=57804

25) <http://www.afnor.org/profils/centre-d-interet/rse-iso-26000/la-norme-iso-26000-en-quelques-mots/#p18145>

이행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²⁶⁾

VI. 사회적 책임 투자

프랑스는 사회적 책임 투자(Investissements socialement responsables)를 “재정 범주 이외에 환경, 사회 및 경영에 관련된 범주를 체계적으로 고려한 일관성 있는 투자 형태(*l'ISR est une forme de placement consistant à prendre systématiquement en compte des critères liés à l'Environnement, au Social et à la Gouvernance(on parle aussi de critères ESG), en sus des critères financiers*)”라고 정의한다.²⁷⁾ 2010년 프랑스의 사회 책임 투자 총액은 685억 유로에 달하며, 매년 35%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Novethic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300개 이상의 투자 회사가 사회 책임 투자 상품을 제안했다.

2001년 사회 책임 투자를 위한 포럼(Forum pou l'investissement)이 설립되었다. 포럼은 프랑스의 사회 책임 투자를 유럽 수준으로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실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분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프랑스는 OECD의 다수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 책임 투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제정했으며, 퇴직자를 위한 예비 기금 규정과 자의적 급여 예금 파트너 계획을 통해 사회, 환경 및 윤리 측면을 고려한 투자 정책을 유도한다. 퇴직연금기금의 경우 사회 책임 투자에 일정액을 투자한다. 또한 2008년 8월 4일 경제 근대화에 관한 법 n° 2008-776(LOI n° 2008-776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은 모든 예금 정책이 연대기금을 제안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2009년 그르넬 1법 제53조도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 책임 투자 촉진을 규정한다.

26) <http://groupe.afnor.org/guide-bonnes-pratiques-languedoc-roussillon/html/guide.html>

27) *L'investissement socialement responsable(ISR)*, les clés de la banque, Juillet 2010, p.4

참고문헌

문헌

- L'investissement socialement responsable(ISR), les clés de la banque, Juillet 2010
- Projet de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rable 2010 – 2013, Premier ministre, Décembre 2010
- Grenelle de l'Environnement, Chantier 25 Comité opérationnel "Entreprises et RSE", MINISTERE DE L'ÉCOLOGIE, DE L'ÉNER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21 mars 2008
- La Responsabilité Sociétale des Entreprises, Rapport de la Mission confiée à Sophie de Menthon par Monsieur Xavier Bertrand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Septembre 2011

인터넷

-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Responsabilite-societale-des.html>
- <http://www.afnor.org/content/view/full/12036>
- <http://www.fibrecitoyenne.org/>
- <http://www.legrenelle-environnement.fr/Presentation-du-Grenelle.html>
- <http://www.social-sante.gouv.fr/espaces,770/handicap,775/dossiers,806/insertion-professionnelle-des,1650/la-charte-de-l-insertion,10850.html>
- <http://www.afd.fr/home>
- <http://www.coface.com/>
- <http://www2.ademe.fr/servlet/getDoc?id=11433&m=3&cid=96>
- <http://investissement-avenir.gouvernement.fr/>
- <http://competitivite.gouv.fr/>
- <http://www.agence-nationale-recherche.fr/>
-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Mission-et-organisation-du-Comite.html>
- <http://www.ci-es.fr/>
- <http://www.vigeo.com/csr-rating-agency/fr/vigeo-rating>
- <http://www.afnor.org/liste-des-actualites/actualites/2011/mars-2011/label-egalite-professionnelle-femme-homme-48-organismes-labellises-au-benefice-de-840-000-salaries/>
- <http://www.fonction-publique.gouv.fr/fonction-publique/carriere-et-parcours-professionnel-37>
- <http://www.imsentreprendre.com/page/ims-entreprendre-pour-la-cite>
- <http://www.epe-asso.org/>
- http://www.orse.org/presentation_de_1_orse-33.html

<http://www.lexisnexis.fr/pdf/DO/mixite.pdf>

http://www2.afnor.org/espace_normalisation/structure.aspx?

<http://www.afnor.org/profils/centre-d-interet/rse-iso-26000/la-norme-iso-26000-en-quelques-mots/#p18145>